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14. 05. 14.
제1차 개정 2015. 03. 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원, 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또는 표절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인지로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④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본교와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5조(본교의 역할과 책임) ① 본교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 행위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본교는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① 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제3장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7조(조직과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무부장이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3.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 보호

제10조(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제보는 교무부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교무부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④ 제보자는 본교에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⑤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③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면 본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기준

제13조(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부정행위의 신고 접수 및 조사 등 제반업무는 교무부에서 담당한다.

② 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본교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④ 총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제14조(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본교가 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예비조사위원회의 형태는 교무부에서 결정한다.

② 본교는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본교는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19조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본교는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6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조사 및 보고서 작성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2. 본교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제18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총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7조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총장에게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판정)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를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교는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총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제22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함)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6.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8.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③ 총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총장에게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보고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요청한다. (항 신설 2015.3.2)

1. 징계
2. 전임교원의 강임, 승진 및 기간제 임용 제한
3.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지
4. 연구비 회수, 지급 중단 또는 연구비 신청의 제한
5. 피조사자에 대한 당해 논문의 철회, 취소 또는 수정 요구 및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대한 통지
6. 석·박사 학위 논문 지도 및 심사의 제한
7. 학술활동장려금의 회수 및 지급 중단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

제23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본교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장 기 타

제24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2014년 05월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부-165, 2015.03.02)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